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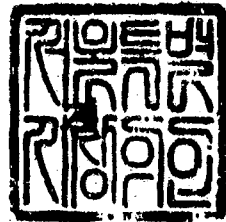
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2월 10일

기억배안실장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실적관리 및평가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세입금 과징기관과 과징담당공무원의 실적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신상필벌을 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할 목적하에 이를 정례화 하고자 제정('77.11.22)하였으나, 현재 이에대한 평가가 사실상 정례화 되어있고 평가항목 등은 평가시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을것이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특기사항 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실적관리 및평가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